

제24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
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06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3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3. 10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협의회를 구성·운영토록 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협의회 구성 시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(안 제5조)
- 나. 상설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 (안 제5조)

4. 관계법령

-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1항
-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제1항

5. 검토의견

- 금번 제출된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하여 협의회 구성시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과 상설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
- 다만, 협의회 구성시 대표자 선정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, 적극적인 협력 및 정책 발굴로 협의회 구성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6. 1. 27.] [법률 제13905호, 2016. 1. 27., 일부개정]

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,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지역 노사민정”이라 한다)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,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

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19. 7. 2.] [대통령령 제29950호, 2019. 7. 2., 타법개정]

제2조(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, 구성 및 기능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지역 노사민정”이라 한다)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2. 4. 16.>

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. 다만,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(互選)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. <개정 2012. 4. 16.>

④ 협의회는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 <신설 2012. 4. 16.>

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
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3.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

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4. 16.>

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는 구성·운영,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·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2. 4. 16.>